

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6
----------	-----

2011년 6월 29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6월 10일 신언근 의원외 19인 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11년 6월 29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업무의 위탁) 제7호는 상위법령인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임.
- 상위법령인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9년 1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,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의 체계 적합성 및 완성도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는 그 법적인 효력과 시민의 신뢰도 측면에서 심각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령인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이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함.
(안 제3조 제7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청수)

안 제3조제7호

-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 개정이 2009년 1월 30일에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정비가 되지 않아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**생략**

5. 토론요지 : **없음**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**구성하지 않았음**

7. 심사결과 : **원안 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**없음**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**없음**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업무의 위탁) 제7호 중

“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”을 “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7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사업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</p>	<p>7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----- ----- ----- -----</p>